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384
------	------

2024.3.5.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16일, 김용호 의원(찬성자 11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4.3.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용호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에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관련 행사,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5조2).
- 소상공인의 제품·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시책을 규정함(안 제8조제2항제12호).
- 소상공인 제품의 전시·홍보 지원을 위한 시책을 규정함(안 제8조제2항제13호).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 기념행사에 대한 개최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창업 및 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작업장의 디지털화와 소상공인 제품의 전시·홍보를 추가하고자 발의됨.

나. 주요 개정사항 검토

(1)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 안 제5조의2는 시장이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소상공인의 날 등) ① 시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관련 행사,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기본법」(이하 “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해 매년 11월 5일을 소상공인의 날로 정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하고 있음.
- 이에 서울시는 2023년부터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기(氣)살리기 페스타, 유공 표창 등의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시행하는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정비(안 제6조)

- 안 제6조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창업 및 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이미 폐지된 희망경제위원회 풀뿌리 특별위원회를 대신하여 소상공인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한 것임.

개정 이전	현 행 (2023년 12월 29일 개정)	개 정 안
제6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생략)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p>1. ~ 8. (현행과 같음) <신 설></p> <p>9. (현행과 같음)</p> <p>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의 풀뿌리 특별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p> <p>④·⑤ (현행과 같음)</p>	<p>1. ~ 8. (생략) <신 설></p> <p>9. (생략)</p> <p>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④·⑤ (생략)</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소상공인 창업 및 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u></p> <p>10. (현행 제9호와 같음)</p> <p>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u>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④·⑤ (현행과 같음)</p>
---	---	--

- 이와 관련하여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 창업·혁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¹⁾,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서울시 시행계획에 창업·혁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정부와 서울시가 수립하는 소상공인 지원계획 간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과 자생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됨.
- 한편 2012년부터 경제정책 자문기구로 운영된 “서울 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는 타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등의 이유로 2020년 이후

1)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② (생략)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생략)

회의개최 실적이 없어 2023년 3월 27일 폐지되었는바,
 안 제6조제3항은 희망경제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인 풀뿌리 특별위원회가
 수행하던 시행계획의 자문 기능을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
 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음.

- 그러나 제6조제3항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에서 희망경제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²⁾”를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를 개정안의 내용에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수정의견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6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② (생략) ③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②(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u>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6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②(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u>제6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u>

(3) 소상공인 지원 시책 추가(안 제8조)

- 안 제8조는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시책으로 작업장의 디지털화와 소상공인 제품의 전시·홍보를 추가하고, 시책을 효율적

2)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6조의2(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8조(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① (생 략) ② 시장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1. ~ 11.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8조(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1. (현행과 같음) 12. <u>소상공인의 제품·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시책</u> 13. <u>소상공인 제품의 전사홍보 지원을 위한 시책</u> ③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소상공인의 지원·육성 시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것은 시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임.
- 특히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시책은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³⁾에서 소공인을 대상으로 규정된 사항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됨.
- 한편 안 제8조제3항은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유관 조례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지원조례”) 제11조(사무의

3)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①~④ (생 략)
 ⑤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제품·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생 략)

위탁)에 이미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위탁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중복입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지적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률이 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나뉘어져 있고, 조례 또한 법률에 대응하여 동 조례와 지원조례로 구별되어 있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두 조례의 관계에 있어 동 규정이 서로 상충되거나 동 규정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측면에서 법리상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소상공인 관련 법률체계 >

법률	조례
「소상공인기본법」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안 제6조제3항은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의 폐지(2023년 3월 27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대해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항은 이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2023년 12월 29일)

되었으므로, 이를 개정안에 반영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Ⅵ.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84
----------	---------

제안년월일 : 2024년 3월 5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6조제3항은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의 폐지(2023년 3월 27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대해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항은 이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2023년 12월 29일) 되었므로, 이를 개정안에 반영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제6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②(생략)</p> <p>③ <u>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제6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6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②(개정안과 같음)</p> <p>③ <u>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제6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u></p>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소상공인의 날 등) ① 시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관련 행사,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상공인 창업 및 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제6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소상공인의 제품·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시책

13. 소상공인 제품의 전시·홍보 지원을 위한 시책

③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6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p> <p>① (생 략)</p> <p>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p> <p>1. ~ 8. (생 략)</p> <p><신 설></p> <p>9. (생 략)</p> <p>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 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p> <p>④·⑤ (생 략)</p> <p>제8조(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① (생 략)</p>	<p>제5조의2(소상공인의 날 등) ① 시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관련 행사,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6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소상공인 창업 및 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u></p> <p>10. (현행 제9호와 같음)</p> <p>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제6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8조(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① (현행과 같음)</p>

② 시장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1. ~ 11.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②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소상공인의 제품·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시책

13. 소상공인 제품의 전시·홍보 지원을 위한 시책

③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